**GME 카드 업무처리 대행계약**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GME”라 한다)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는 “GME”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 혹은 직불 전자지급수단인 “GME카드” 관련 업무 중 일부를 “비씨카드”가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 대행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기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GME”가 회원에게 발급하고 관리하는 “GME 카드” 업무 중 일부를 “비씨카드”가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범위와 운용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GME”가 정한 입회절차에 따라 “GME 카드”를 신청하여 “GME”로부터 승낙을 받아 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GME 카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선불 혹은 직불 전자지급수단으로서, “회원”과 “비씨카드”의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으로 “회원”이 보유하는 전자지급수단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GME”가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이 증표는 플라스틱카드, 모바일(QR), NFC등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3. “공카드”라 함은 “GME”와 “비씨카드”의 사전 협의에 따른 무기명 상태의 “GME 카드”를 말한다.
4. “가맹점”이라 함은 “비씨카드”와 가맹점계약이 체결된 곳으로서 “GME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비씨카드”의 가맹점을 말한다.
5. “가맹점수수료”란 “GME”가 발행한 “GME 카드” 등을 소지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GME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GME”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매입업무”란 “GME”가 발행한 “GME 카드” 등을 소지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GME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가맹점과 “GME”의 중간에서 카드 등의 승인을 위하여 결제정보 등을 중계하는 거래승인 중계업무와 “비씨카드”가 수행하는 가맹점 대금결제 업무를 말한다.
7. “대행업무”란 관련 법령에서 정한 “GME”의 본질업무 이외에 본 계약에 근거하여 “비씨카드”가 “GME”를 위해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대행수수료”란 “비씨카드”가 제3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GME”가 제12조에 따라 “비씨카드”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2장 업무대행**

**제3조(업무 범위)** ① 본 계약에 따라 “비씨카드”가 “GME”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 업무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속계약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 서면 합의(이하 통칭하여 “부속계약서 등”)로 정한다.

가. “공카드” 제작·공급 및 품질 등 이력 관리

나. “GME 카드” 거래승인·취소 중계

다. “GME”와 “비씨카드”의 합의에 따른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의 제공

라. “GME 카드” 상품개발 및 홍보 디자인 지원

마. “가맹점”에서 “회원”이 이용한 거래건의 매출 전표에 대한 매입 및 가맹점 대금 정산업무

바. “회원” 또는 “가맹점”의 부정사용 및 사용부인에 관한 조사 지원

사. “GME 카드” 이용과 관련한 정보의 보존관리와 교환업무

아. “GME”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기관 및 “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송부

자. 본 계약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산개발 구축, 운영 지원

차.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GME” 와 “회원”에 대한 지원

② “비씨카드”는 “GME”로부터 관계 법령, 제도변경 또는 업무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GME”와 “비씨카드”는 제1항의 업무대행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추가·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바목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GME”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씨카드”는 “비씨카드”가 실시한 조사 업무 수행 내역에 관하여 “GME”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GME”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추가 조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GME”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카드일반)** ① “GME 카드”의 국내·외 사용, 상표, 상품 종류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② “공카드”는 국내 금융IC인증(금융결제원 인증)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비씨카드”는 제3조의 업무대행을 위하여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을 “GME”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GME”가 그 발행자임을 관계기관에 안내하도록 한다.

④ “공카드”의 매체(M/S 및 IC칩)는 “GME”가 지정하여 관리하거나 “비씨카드”에 지정,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이용 등을 위하여 매체에 별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GME” 또는 “비씨카드”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매체 등에 이를 적용한다.

⑤ “공카드” 제작 시 적용되는 암호화 키(Key)는 “비씨카드”가 관리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GME”가 직접 카드발행을 위하여 공유, 관리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각 암호화 키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⑥ “비씨카드”는 카드의 매체에 현금카드기능 등 “GME”가 요청하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Application을 탑재하여 “GME”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⑦ “GME 카드”의 디자인은 “GME”가 제공하며, “GME”는 별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비씨카드”에 요청할 수 있다.

⑧ “비씨카드”는 “GME”의 “GME 카드” 상품에 필요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⑨ 제8항 외에 비용이 수반되는 제휴서비스, 공동 마케팅 등을 추가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카드 공급)** ① “GME”의 신청에 대하여 “비씨카드”는 카드를 조달하여 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GME”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카드입고 요청일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비씨카드”는 “GME”의 카드입고 요청일에 카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드 신청 및 공급 물량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비씨카드”는 “GME”에게 공급한 카드의 생성부터 출고까지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고, “GME”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번호)** ① “GME 카드”의 카드번호는 카드별 고유번호로 카드발행 시마다 변경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이 6자리의 BIN(Bank Identification Number)과 일련번호 8자리, 검증번호 2자리로 운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1 | 2 | 3 | 4 | 5 | 6 | 7 | 8 | 1 | 2 |
| 카드BIN | | | | | | 일련번호 | | | | | | | | 검증번호 | |

② 카드 BIN은 PREFIX NO 4자리와 기관식별번호 2자리로 하며 “GME 카드”의 기관식별번호는 본 계약 체결 후 협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다. 식별번호 확대 시에는 “GME”와 “비씨카드”가 별도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7조(가맹점 이용지원)** ① “비씨카드”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GME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의 가맹점 이용 시 “비씨카드”의 회원과 차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씨카드”는 가맹점약관의 개정, “가맹점”에 대한 정책의 변경 등으로 “회원”의 카드 이용 시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이를 즉시 “GME”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가맹점 사용승인 중계)** ① “회원”의 “GME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의 승인요청 시 “비씨카드”는 양 당사자가 사전 협의하여 정한 “비씨카드”의 승인·거절 사전처리사항 및 그 사유를 포함하여 “GME”에게 실시간으로 중계 처리한다.

② “GME”는 “비씨카드”가 중계 처리한 승인 요청 건에 대해 자체 기준에 의해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한다.

③ “비씨카드” 또는 부가가치통신사업자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작업 등으로 “회원”의 카드사용이 불가할 것이 예정되거나 이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 “비씨카드”는 즉시 그 사유와 이용불가 시간을 “GME”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씨카드”의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GME”,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씨카드”는 “GME”,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카드사 간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 이용제와 관련된 업무 처리 기준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처리 지침(여신금융협회 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가맹점 대금정산)**

① “비씨카드”는 “GME 카드”의 매출 건과 관련하여 “가맹점”과의 통상적인 매출전표 매입업무(VAN사 관련 업무 포함)에 준하여 처리하되, “비씨카드”의 회원 매출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회원”의 “GME 카드” 이용 건에 대해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대금청구 시 “비씨카드”는 이를 “GME”에게 청구하고 “GME”는 승인 금액에서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가맹점 대금”이라 한다.)을 “GME”와 “비씨카드”가 부속계약서 등에서 합의한 주기로 “비씨카드”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③ “비씨카드”가 “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지급한 이후 “회원” 또는 “가맹점”의매출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GME”와 “비씨카드”의 별도 합의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선불충전금 관리)**

① “GME”은 고객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및 후속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비씨카드”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GME”이 제1항상의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비씨카드”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씨카드”는 이에 대응하여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기밀유지)**

① 본 계약에 의거 “GME”와 “비씨카드”는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상호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비씨카드”는 대행업무 수행 시 취득한 “GME”의 회원정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가맹점 정보 등을 “GME”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GME”와 “비씨카드”는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 이행 중 취득한 회원정보 및 영업정보 등에 대하여 "회원” 또는 양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씨카드”는 “GME”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계, 연구, 분석 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 이행 중 취득한 제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회원정보 및 영업정보를 누설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혹은 “회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 기간만료 기타 사유로 인해 종료한 후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12조(외부기관 자료제공 및 협조)** ① “GME”와 “비씨카드”가 외부기관에 “GME 카드” 및 “회원” 등 관련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GME”의 요청에 따라 “비씨카드”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양 당사자가 협의한다.  
② “GME”와 “비씨카드”는 감독기관의 요청이나 검사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협조나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GME”는 본 계약 및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비씨카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13조(대행수수료 및 정산)** ① 양 당사자 간 정산 수수료 항목과 그 기준은 아래 [붙임] ‘대행수수료 정산’에 의한다. 다만,시장가격 변동 시 공급받는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GME”가 “비씨카드”에게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비씨카드”는 항목별 수수료 명세를 첨부하여 “GME”에게 영업일 기준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청구하고, “GME”는 “비씨카드”가 지정하는 계좌로 영업일 기준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 처리한다.

③ 제2항에서 “GME”가 “비씨카드”에게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는 원 미만이 발생하면 항목별로 절사한다.

**제14조(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회원”의 식별정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GME”의 서버에 개발된 카드 전산프로그램 등의 소유권은 "GME"에게 있다. 단, “비씨카드”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GME”에게 제공한 영업정보 및 업무노하우, 송수신 데이터 전문 레이아웃 등의 재산권은 “GME”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 과정에서 “비씨카드”가 “GME”에게 제공한 영업정보 및 업무노하우, 송수신 데이터 전문 레이아웃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비씨카드”에게 귀속되며, “GME”는 본 계약에 의한 제휴업무 목적 내에서만 포괄적 사용권을 갖는다.

② “GME”와 “비씨카드”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정보 및 업무노하우, 송수신 데이터 전문 레이아웃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정,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유출할 수 없다.

③ 본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➃ 본 계약과 관련하여 “GME”의 서버에 개발된 카드 전산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GME”에게 귀속된다.

**제16조 (제3자 제휴 제한)**

1. “GME”는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결제 업무를 유치 및 수익화할 수 없다.
2. “GME”는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와 결제 업무 관련 제휴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비씨카드”로 통지하고 양사가 상호 문서로 합의하여야 한다.
3. “GME”가 본 조항을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비씨카드”에 발생한 손해배상의무 및 기타 법적 책임은 모두 “GME”에 귀속된다.

**제3장 업무대행 전산프로세스 개발**

**제17조(전산개발)** ①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GME”와 “비씨카드”는 전산개발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후 별도로 부속계약서 등을 체결하여 개발범위를 확정한다.

② 업무대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프로세스 등 전산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되, 공통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GME”와 “비씨카드”는 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책임자와 전산개발 조직을 구성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씨카드”는 “GME”의 회원원장을 포함한 “GME 카드” 업무처리와 관련한 전산개발을 지원하고 이 경우 “비씨카드”는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GME”가 보유하게 되는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추후 “GME”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⑤ “비씨카드”는 “GME”가 “GME 카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GME 카드”의 실적·통계 데이터의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⑥ “비씨카드”는 통신 및 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하여 시스템 이중화,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비씨카드”는 “GME”의 회원 및 승인정보에 대하여 “비씨카드”의 회원 또는 “비씨카드”의 타 제휴사 회원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⑧ “비씨카드”는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보안성 심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불충족으로 인한 책임은 “비씨카드”가 부담한다.

**제18조(통신회선 비용분담)** 제3조의 업무대행을 위한 “GME”와 “비씨카드” 간의 통신회선 설치 및 비용은 양 당사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기타사항**

**제1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카드 출시일은 양사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GME” 또는 “비씨카드”가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다.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GME 카드” 업무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범위에서 후속 업체가 용역업무를 제공하거나 “GME”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같은 계약조건(계약금액, 업무대행범위 등)으로 “비씨카드”는 “GME”의 “GME 카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다만,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

**제 20조(계약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은 “GME”와 “비씨카드”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② “GME”와 “비씨카드”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서면통지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발생한다.

가. 본 계약의 협조 또는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나. 부도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회생절차, 파산절차 등

관계 법령상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신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③ “GME”와 “비씨카드” 중 일방이 제2항의 사유 이외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독촉하고 상호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되, 시정되지 않을 때 서면통지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해지의 효력은 서면통지 송달일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발생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GME” 또는 “비씨카드”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GME 카드”의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금융감독기관의 지침 또는 명령의 제정(지침·명령의 변경을 포함한다),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써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시점까지 미정산된 금액은 그 다음 달 25일까지 정산 완료되어야 한다.

**제21조(손해 배상)**

① “GME” 또는 “비씨카드”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행되어 상대방 또는 “회원”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회원” 및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GME”와 “비씨카드” 양 당사자 모두 상대방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신의성실)**

“GME”와 “비씨카드”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제반업무 진행 및 운용 과정에서 상호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23조(사고대응)**

“GME”와 “비씨카드”는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테러행위, 그 밖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을 감지할 경우, 그 사고 발생의 귀책과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대책을 상호 협의하여 대응한다.

**제24조(권리 침해)**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있어 “GME” 또는 “비씨카드”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만료 후일지라도 양 당사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 해결에 임해야 한다.

**제25조(계약상 권리의무 양도제한)**

“GME”와 “비씨카드”는 상호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법률 준수)**

① “GME”와 “비씨카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이해상충 방지·관리의무 및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정책 또는 행정 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협업하여야 한다.

④ “GME”와 “비씨카드”는 보안성 대책으로 관련 법규 및 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GME”와 “비씨카드”는 상대방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보안성 확보를 위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청렴 계약)**

①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의 계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때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 법원)**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라 해결하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로 한다.

**제29조 (기타)**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 체결 후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별도의 부속계약서를 체결하며, 부속계약서는 본 계약과 같은 효력을 지니되 그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 30조 (리스크 회피)**

① “GME”의 신용등급이 A등급 미만일 경우, 제9조 제2항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비씨카드”에 제공한다. 단, 보증보험 계약 내용 및 스케줄 등 구체적인 조건은 협의를 통해 별도의 부속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전항의 보증보험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비씨카드”는 “GM”의 대행업무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GME”와 “비씨카드”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7월 00일

|  |  |
| --- | --- |
| **“GME”**  **서울시 영등포구영등포로 150**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에스**  **대 표 이 사 성 종 화 (인)** | **“비씨카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비 씨 카 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최 원 석 (인)** |

**[붙임] 대행수수료 정산  
1. 대행수수료 항목 및 용어 정의**

- 대행수수료란 “GME 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본 계약 제12조에 따라 “GME”가 “비씨카드”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가격체계는 아래와 같다.

① “매출액연동수수료”는 본 계약 제3조 제1항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기준은 **“2. 대행수수료기준”**에 따른다.

② “정상매출액”이란 정상매입금액에서 취소거래금액을 차감한 매출금액을  
 말한다.

③ **“2. 대행수수료 기준”** 하단의 “위임업무”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임 업무  
 항목이나 비용 및 추가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적용한다.

**2. 대행수수료 기준**

- 대행수수료 기준표

|  |  |  |
| --- | --- | --- |
| 항목 | 수수료 기준 | 비고 |
| 매출액 연동 수수료 | 정상 매출액 × 수수료율 0.6% + 매입 건수 \* 35원 (우대수수료) | 정상 매출액 x 수수료율 0.6% +  매입 건수 \* 40원(기본수수료) |
| 발급 수수료 | 정상 발급건수 x 950원 | 일괄발급/조달/배송 운영 등 |
| 토큰이용 수수료 | 토큰 이용건 x 12원 (건수 기준 슬라이딩 단가)  Ex) 12만건 토큰 결제 발생시 수수료 계산 방법  (10만 \* 12원) + (2만 \* 11원)  = 142만원 | - 매월1일~말일까지 월별 총 건수 기준 슬라이딩 단가 적용  ㅇ 1~10만건 : 12원  ㅇ ~20만건 : 11원  ㅇ ~30만건 : 10원  ㅇ ~40만건 : 9원  ㅇ ~50만건 : 8원  ㅇ ~60만건 : 7원  ㅇ ~70만건 : 6원  ㅇ ~80만건 : 5원  ㅇ ~90만건 : 4원  ㅇ ~100만건 : 3원  ㅇ ~110만건 : 2원  ㅇ ~110만건 초과 : 1원 |

- 대행수수료 체계 내(內)에 반영된 위임업무는 아래 내용과 같다.

ㅇ 카드 발급 및 발송 운영 업무 (단, 공카드 조달비용 및 배송비용 별도 실비 처리)

ㅇ 카드 거래승인 중계 업무

ㅇ 가맹점 대금 정산 업무

ㅇ 회원 원장 등록 및 사고 등재 업무

※ 대행 수수료 기준표 내 ‘매출액 연동 수수료’의 경우 “GME”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통계, 연구, 분석 목적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 가능함을 전제로 한 “우대수수료”임

- 당사가 “GME”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연동 수수료 비고란에 명시한 “기본 수수료”로 재조정

※ 상기 대행수수료 외 실비성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부속계약서 등을 적용

※ 급격한 시장변동 등으로 VAN사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협의하여 대행수수료

조정 가능